

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포천삼정초등학교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조치사항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침해행위 유형	개념
상해/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②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u>교권(敎權)</u> 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나.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침해 학생 조치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4.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 ②항

나.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교원'으로 인정된 교원

【피해교원 보호 조치】
교원지위법 제15조 ②항 - 1호 심리상담 및 조인 - 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피해교원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3호 조치

II. 교육활동 예방교육 추진 계획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학기별 1회(5월, 9월)

- (운영 방법) 자체연수, 외부강사 초청 연수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학기별 1회(5월, 9월)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외부강사 초청 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홈페이지 탑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학기별 1회(5월, 9월)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의 날,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홈페이지 탑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홍보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연중
- (알림 내용)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운영 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활용 안내



포천삼성교육소식

담당 : 길 영 섭 (535-6474 내선 300)

서로 다른
아름다움
이
꽃으로
피어나는
포천삼성교육

www.pcsj.es.kr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자료

1 교권보호의 이해

근거

- 『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 교육이 살아납니다.”

- 교권(敎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고, ‘학생 인권’ 신장이 ‘교권’ 신장으로 이어질 때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학부모나 학교 외부 인사가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부당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교권침해의 예방

● 교권침해란?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정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교권침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학부모 학교 참여 심제명 Ⅰ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Ⅱ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Ⅱ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시 학교 출입자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 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 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Ⅲ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Ⅲ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전화나 문자로 사전 약속을 합니다.
- ☞ 교사에게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8시 이후에는 가급적 연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2023. 05. 22.

포 천 삼 정 초 등 학 교 장